

자연공원과 환경보전



조 태 동

충북개발연구원책임연구원
환경계획학박사

약 력

- 1984년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 1988년 청주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1995년 일본 치바대학대학원(千葉大學院) 환경계획학박사
- 1997년 현재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재직

자연공원이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특이한 경관, 원시성이 높은 야생 동·식물상 등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계획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공원의 원점은 미국 록키산맥의대 자연을 대상으로 웅대한 자연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면서 한편은 국민의 복지에 이용한다고 하는 발상으로서 1872년 세계최초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200여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국립공원제도의 역사는 이미 1세기 이상을 경과하였고 이 제도는 세계각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파급되었는데 각각 그 나라의 자연·사회적 배경의 특징에 따라서 자연공원(Natural Park)은 독자적인 체도를 정립하고 있다.

미국은 광대하고 원시적인 지역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이용을 제공하는 국립공원(National Park)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국립



공원체계(National Park System)로는 ①자연적 지역 ②역사·문화재적지역 ③야외 레크레이션 지역의 3카테고리에 분류되는 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스위스, 독일, 소련의 자연공원은 자연보호연구지구로서 성격이 짙고, 아프리카제국의 자연공원은 야생동물 보호지구로서 비중이 실려있다.

또 영국에서는 낮은 구릉 등 자연적 특성에 따라 인간의 영향을 받은 전원지대의 야외 레크레이션 장려도 자연공원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들 수 있다.

현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는 1969년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ational Park를 정의(定義)했는데, ①일정면적 이상이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뛰어난 자연지역, ②그 지역에서의 개발과 거

주를 방지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배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③기존의 조건으로서 사람들의 미적, 교육적, 문화적 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110개 나라에서 자연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각각 그 나라의 국정(國情)에 의하여 제도의 내용에는 다소의 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토의 뛰어난 자연과 환경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 규모의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해결로서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하는 인식이 높은 속에서 국립공원과 같이 환경보전·자연보호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의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1



실이다.

본인은 일본 유학 당시 (치바대학(千葉大學) ;

세기 뒤늦은 1967년에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했는데, 도입당시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관광적 이용자의 위치를 주목적으로 한 개발우선정책에 주력했다.

이에 따른 자연과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등을 발생시켰으며,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쓰레기처리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87년 국립공원에 관한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조직에 의한 보호와 이용에 균형있는 정책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관리공단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

1989~1995년)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본 지면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계획상 용도지구문제와 관리운영상의 예산문제에 대하여 지역제국립공원인 일본, 영국, 우리나라를 간단히 비교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국립공원의 용도지구(일본에서는 『지구계획』이라고 함)계획을 보면, 크게 보호계획과 이용계획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계획은 다시 『보호를위한규제계획』과 『보호를위한시설계획』으로 나누고 있고, 이용계획은 『이용을위한규제계획』과 『이용을위한시설계

획』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계획에 관하여만 소개하고자 하는데 보호계획내 『보호를위한규제계획』으로는 다시 육상지역과 해상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육상지역에는 특별지역과 보통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특별지역내에 특별보호지구, 제1종특별지역, 제2종특별지역, 제3종특별지역으로 단계별 보호체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다중 보호체제를 세우고 있는데, 예를들면 국유자연보호지구, 왕실조류보호지구,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지구 등 수종의 보호책을 국립공원내에 이중으로 지정하여 개발압력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허용행위를 보게되면 양국 모두 엄정보호지구내에서는 낙엽, 가지조차도 허가를 득한 후에 채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보호체제는 일본과 같이 단계별 보호체제를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로 나누고 있지만 엄정보호지구인 자연보존지구라도 현행 자연공원법 제13조를 근거하여 국책사업에 의하면 언제든지 용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고 시설물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좋은 예로서 지리산국립공원이나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데, 지리산은 성산로개통을, 덕유산은 리조트지를 개발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적 측면에 관련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환경청 자연보호국의 예산책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산책정은 전체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보전에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항목이다.

제1항목의 『자연환경보전대책비』는 자연환경보전조사, 야생생물 생식환경 등 보전대책, 국제야생생물보호대책, 자연보호교육활동추진사업, 생물다양성보전대책에 대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제3항목의 『자연공원등유지관리비』로서는 국립공원 등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 제5항목의 『조수등보호대책』으로서 특정야생생물보호비, 국제조수보호구역관리강화에 대한 예산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선진제외국에서는 자연공원을 환경보전의 중핵적(中核的)인 요소로 취급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강력한 보호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0여년에 이르고 있

지만 국립공원체제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계자나 국민 모두 자연공원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고,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IUCN에서 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전환을 목표로 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법제도의 개정에 따른 엄정보호지구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용자에 대한 환경교육과 서비스차원의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나 자연해설, 자연연구로(Natural Trail) 등 교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예산의 책정이 요구되고 있다. ●